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8월 21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8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2009년 9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도로과장 김정수)

□ 제안이유

- 「도로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1234호, 2008.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안 제1조)
 - 제24조의8 → 제34조

가. 도로관리심의회의 기능 및 구성요건을 「도로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비함.(안 제2조 및 제3조)

3. 주요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의	답 변
○도로공사시 위원회 위원 위촉시 해당지역 주민을 어떻게 위촉하는지?	○해당지역 주민 중 공사기간만 위촉하여 운영하고 공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촉할 계획임.
○위원회 위원은 30명으로 위촉되는데 지역 위촉위원들은 매번 위촉과 ·해촉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을 위촉하여 상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운영 세칙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검토 추진하겠음.
○위원회 운영시 운영 세칙에 조례와 부합되도록 제정하고 상시위원과 임시위원으로 구분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는지?	○업무의 효율성에 맞도록 운영 세칙을 정할 때 검토 추진하겠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도로관리심의회조례”를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8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이내”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하고, 제2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로 하며,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제5항 중 “공무원중”을 “공무원 중”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 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중 “심의회는 그가”를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로 하고, “10인 이상 20인이내”를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며, “사항중”을 “사항 중”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심의회에는 제3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중 “5일전에”를 “5일 전에”로 한다.

제9조제목 중 “요구등”을 “요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지하매설물”을 “제2조제4호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로 하며,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을 “해당 주요지하매설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목 “(시행세칙)”을 “(운영세칙)”으로 하고, 본문 중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운영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 를 “제2조” 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원인자”라 함은”을 ““원인자”란”으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64조”를 “법 제76조”로 한다.

②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0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준용하다.”를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한다.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471호
의결 년월일	2009. 9. 8. (제154회)

제출년월일 : 2009. 8. 21.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제안이유

- 「도로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1234호, 2008.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조 번호를 조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는 한편,
- 법문장 표기의 한글화 및 어려운 용어를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 시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 번호를 정비함.(안 제1조)
 - 제24조의8 → 제34조
- 가. 도로관리심의회 기능 및 구성요건을 「도로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정비함.(안 제2조 및 제3조)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도로관리심의회조례”를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시행령 제24조의8규정에 의하여”를 “「도로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3조제1항 중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명이내”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하고, 제2항 중 “위원장은 부시장이”를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로 하며, “위원중”을 “위원 중”으로 하고, 제4항 중 “1인”을 “1명”으로 하며, 제5항 중 “공무원중”을 “공무원 중”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 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중 “심의회는 그가”를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로 하고, “10인 이상 20인이내”를 “10명 이상 20명 이내”로 하며, “사항중”을 “사항 중”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소심의회에는 제3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 중 “5일전에”를 “5일 전에”로 한다.

제9조제목 중 “요구등”을 “요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지하매설물”을 “제2조제4호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로 하며,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을 “해당 주요지하매설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제목 “(시행세칙)”을 “(운영세칙)”으로 하고, 본문 중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을 “운영 등에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64조”를 “「도로법」 제76조”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 를 “제2조” 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원인자”라 함은”을 ““원인자”란”으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64조”를 “법 제76조”로 한다.

②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0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준용하다.”를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조례</u>	<u>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u>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 <u>도로법 시행령</u> 」 제34조에 따라 ----- ----- ----- ----- -----.
제2조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u>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u> 2. <u>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및 교통소통 대책</u> 3. <u>도로굴착 관련시설의 유지관리</u> 4. <u>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u> 5. <u>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u> 6. <u>제1호 내지 제5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u>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u>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u> 2. <u>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u> 3. <u>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u> 4. <u>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u> 5. <u>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u> 6. <u>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u>
제3조 (구성) ① 심의회는 <u>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	제3조(구성) ① --- <u>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u> -----.

현행	개정안
<p>② <u>위원장은 부시장이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u></p> <p>③ <u>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u> 2. <u>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u> 3. <u>도로 및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 <p>④ <u>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u></p> <p>⑤ <u>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u></p>	<p>② <u>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위원 중-----.</u></p> <p>③ <u>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u> 2. <u>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u> 3. <u>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 4. <u>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u> 5. <u>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u> <p>④ ----- ----- -----1명-----.</p> <p>⑤ ----- -----공무원 중에서-----.</p>
<p>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u>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회무를 통할한다.</u></p> <p>② <u>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u>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u></p> <p>② <u>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현행	개정안
<p>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 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 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p>	<p>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 다.</p>
<p>제5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 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 임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 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 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p>	<p>제5조(위원의 임기) ----- -----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 ----- ----- -----.</p>
<p>제7조 (소심의회) 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인이상 20인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가 심의·조정을 거 친 사항은 심의회가 심의·조정 을 거친 것으로 본다.</p>	<p>제7조(소심의회) ① 심의회는 위원 장이----- -----10명 이상 20명 이 내 ----- ----- 사항 중 -- ----- -----.</p>
<p><신 설></p>	<p>② 소심의회에는 제3조제3항제3 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 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 어야 한다.</p>
<p>제8조 (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의 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p>	<p>제8조(안건의 송부) ----- ----- ----- 5일 전에 ----- -----.</p>

현행	개정안
<p>제9조 (자료제출 요구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p>	<p>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 ----- ----- ----- 제2조제4호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 ----- ----- ----- 해당 주요지하매설물 ----- -----.</p>
<p>제10조 (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제12조 (시행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p>	<p>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 -----.</p>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4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터널·교량·도선장·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말한다.</p> <p>2.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를 하여 도로를 손괴하는 자를 말한다.</p> <p>3.~5. (생략)</p> <p>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의 단서 및 원인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64조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1.~3. (현행과 같음)</p> <p>• ③ (생략)</p>	<p>제1조(목적) ----- 「도로법」 제76조 ----- ----- ----- ----- .</p> <p>제2조(정의) ----- ----- .</p> <p>1. ----- ----- 제2조----- ----- ----- ----- ----- .</p> <p>2. “원인자”란 ----- ----- ----- .</p> <p>3.~5. (현행과 같음)</p> <p>제4조(원인자부담금의 산정) ① ----- ----- ----- 법 제76조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1.~3. (생략)</p> <p>③ (현행과 같음)</p>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u>제10조</u>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p> <p>2. "무단점용"이란 「도로법」 <u>제40조</u>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조(과태료) ① (생략)</p> <p>1.~4. (생략)</p> <p>② (생략)</p> <p>③ 제1항의 <u>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40조를 준용한다.</u></p>	<p>제2조(정의) ----- -----.</p> <p>1. ----- ----- ----- <u>제7조</u> ----- -----.</p> <p>2. ----- <u>제38조</u>----- ----- ----- -----.</p> <p>제3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u>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u></p>

<관계법령 발췌서>

○ 도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
 2. "국도대체우회도로"란 특별자치도 또는 시(市)의 관할 구역을 지나가는 기존의 일반국도를 대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우회 구간의 도로를 말한다.
 3. "국가지원지방도"란 지방도(地方道) 중 중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 지역을 연결하며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루어진 국가 기간도로망을 보조하는 도로(교통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시도·군도 또는 신설구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노선이 지정된 것을 말한다.
 4.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 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도로 원표(元標), 이정표, 수선 담당 구역표, 도로 경계표와 도로표지
 - 나. 도로의 방호(防護) 울타리, 가로수 또는 가로등으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 다. 도로에 연결(連接)하는 자동차 주차장 및 도로 수선용 재료 적치장과 이들 시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도로관리사업소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 라. 도로에 관한 정보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또는 긴급 연락시설로서 도로 관리청이 설치한 것
 -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5. "타공작물"이란 도로와 서로 그 효용을 함께 하는 제방, 언제(堰堤), 호안(護岸), 철도 또는 궤도용의 교량, 횡단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 ② 제1항제1호의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渡船場), 도로용 엘리베이터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 ③ 제1항제3호에 따른 대통령령에는 그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 종점, 중요 경과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 (준용) 제2조제1항제4호·제5호, 제3조부터 제5조까지, 제23조,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제38조부터 제47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6조, 제67조, 제74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및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준용한다

제38조 (도로의 점용) ①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 점용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의 굴착, 그 밖에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지하 매설물(이하 "주요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공사를 마친 때에는 준공도면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 ④ 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이 설치된 도로에 대하여 굴착공사가 따르는 점용허가를 하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요지하매설물이 있는 도로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면 그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가 입회한 가운데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76조 (원인자 부담금)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 도로법 시행령

제34조(도로관리심의회의 설치 등) ①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관리청(관

리청이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거나 대행시킨 경우에는 그 수입자 또는 대행자를 말한다. 이하 제35조에서 같다)에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도로굴착관련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
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35조(도로관리심의회의 구성) ① 관리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관리심의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1. 고속국도: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의 상임이사
2. 일반국도: 지방국토관리청장
3. 특별시도·광역시도·지방도: 해당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도로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는 자
4. 시도·군도·구도: 해당 시·군 또는 구의 부시장·부군수 또는 부구청장

③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관리청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
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
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
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제3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7조(관리심의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관리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관리심의회가 제3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하려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38조(소심의회) ① 관리심의회는 그가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② 소심의회에는 제35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39조(수당)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09.4.1>